



보인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전·편입학 모집요강(3차)

1 모집인원

모집 구분	전형별 모집인원					비 고
	정원 내			정원 외		
	일반전형	사회통합 전형	체육특기자 전 형	보훈자 자녀 전형	고입특례 대상자 전형	
1학년	0명	0명	결원없음	0명	0명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전편입학 원서 제출 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자 및 해외 고등학교 해당 학년에 재학 중인 자(고입자격검정고시 포함)
- 2) 해외귀국자 중 인정 유학으로 해당 학년의 학력에 적합한 일반귀국자(비 특례 입학 대상자)
- 3) 자율형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시교육감에서 협의 요청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1)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즉 '실거주자'를 뜻함. 만약 '가거주자(실거주자가 아닌 자)로 확인이 된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함.

【실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
 - 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2. 가거주의 판단 ⇒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 ※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으나, 실거주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 목록】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input type="checkbox"/>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input type="checkbox"/>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기본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친권자 전학 동의서 1부[서식 5]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학생)기본증명서 : 친권자 확인 가능한 서류 ※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의 혼인 및 이혼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④ 부모가 '사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input type="checkbox"/>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이전 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input type="checkbox"/>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input type="checkbox"/>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전부터 별거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1부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내역이 등재된 것) 1부 <input type="checkbox"/> 담임의견서(학교장이 확인 날인) 1부
⑦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1부 <input type="checkbox"/>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학생 기본 증명서 1부	
⑧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체육특기자전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축구 종목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참고자료 5」 참조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보훈자녀
		사회다양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성 전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160% 이하
	2 순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정 원 외	보 훈 자 자 녀 전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참고자료 5」 참조 	
	고 입 특 례 대 상 자 전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증빙 서류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라. 기회균등전형 **보훈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안내 사항

1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

나. 다문화가정

-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3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편입학원서(문서 별첨) 1부 ○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문서 별첨) 1부 ○ 서약서(문서 별첨)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문서 별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II 1부(최종 합격 후 제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하 검정고시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1부 			
일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체육특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특기자 증명서(출신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1부 			
사회 통합 전형	사회통합 전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 공단) 1부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 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 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보훈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 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 「참고자료 5」 참조 				
사회 통합 전형	공통 (가구원 수별 중위소 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 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2순위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보훈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 「참고자료 5」 참조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4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유의 사항
원서 접수	2022.05.09.(월)~2022.05.13(금) 12:00까지 ※5월 13일(금) 12:00 추첨 실시 및 14:00 합격자 발표	제1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접수 불가 기간 가) 공휴일 나) 본교 휴업일

※ 타 지역에서 이사 온 학생이나 귀국 학생 등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본인 의사를 밝힌 경우, 본교 '입학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을 수 있음.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 가. 일반전형 :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 선발
- 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및 체육특기자 전형 : 본교입학전형에 준함
- 다. 고입특례대상자 전형 : 본교 입학전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발

6 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타 자율형 사립고와 이중으로 지원한 자

7 사회통합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 1) 2022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2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 2)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다더라도 교육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3) 참고: 「2021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입학전형	구 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기회균등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사회다양성전형 일반 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지원 (362,700원 이내)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2021학년도부터 단계별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지원 기준에 따름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	입학 전형	지원 자격		대상 확인
[총 4종]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공 통 (입학전형 무관)	법 정 저소득 자 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② 수련활동비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소득인정액 기 준	중위소득 50%이하	
③ 앨범비	공 통 (입학전형 무관)	기 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④ 기숙사비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실비
3. 앨범비(3학년)	1인당 50,000원 이내 실비
4. 기숙사비(기숙사 입사생)	학교별 순수 기숙사비 50% + 기숙에 따른 조·석식비 전액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프로그램 내용(제목)
학교생활 적응	Forsythia(개나리) 프로그램
학업증진	Ginkgo(은행나무) 프로그램
	심층면접 독서 아카데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문화공연체험단
	힐링아트 - 프라모델
	기타연주반
	레포트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창체 포트폴리오 컨설팅 프로그램
	창의인성 아카데미 지원
	원서비 지원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전.편입학생 모집요강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전.편입학 전형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입학관련 문의>
 (우)057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9길 18 (오금동)
 홈페이지 : www.boin.hs.kr/
 대표전화 ☎ 02)2043-6021, FAX 02)449-8064
 교무기획부 ☎ 02)2043-6021(내선 320)

참고 자료 1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최소 원서 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및 재산세 기준 적용

※ 2021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재산세납부금액*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출처: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참고 자료 3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사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사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사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가정 자녀
보훈자 자녀 전형 (정원 외)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학비 면제 대상

* 지원 당시 소속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기준중위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1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 로 발급받아 제출)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 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참고 자료 5 **사회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범위 및 제출서류**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대상으로 별개 사항임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필수서류 2/4]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 부 모 확 인 서

※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지원학생	성명							접수번호	※	-						
	주민번호 (앞 6자리)							학부모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주 소																
지원유형 및 지원자격	일반전형	()														
	체육특기자전형	()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				소득분위()								
			2순위	()												
	3순위		()													
정원 외	보훈자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고입 특례 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호 ()목 대상자														
<p>본인은 위 전·편입학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전·편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성명 : (인/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성명 : (인/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보 인 고 등 학 교 장 귀하</p>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필수서류 3/4]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자율형사립고인 보인고등학교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전·편입학 전형 기간 중 보인고등학교 이외의 타 학교에 전·편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 본인이 보인고등학교의 전·편입학 전형에 합격하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인고등학교로 전·편입학 등록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보호자 성명 : (인/서명)

보 인 고 등 학 교 장 귀하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필수서류 4/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 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보호자 성명 : (인/서명)

보 인 고 등 학 교 장 귀하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선택서류 1/3]

* 타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작성

* 학교명 :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기재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 속 : 고등학교
 (학년 반)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인)

보 인 고 등 학 교 장 귀하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선택서류 2/3]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만 필요하며,

친권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함

친 권 자 전 학 동 의 서

(해당 학생의 친권자가 자필로 작성)

- 성 명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 휴대폰번호 :
- 전학학생과의 관계 :

상기 본인은 ()의 친권자로서 ()에게

자녀교육을 양도하며 학생 전학에 적극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생)친권자 성명 : (인)

보 인 고 등 학 교 장 귀하

